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및 규정

2020. 6. 26.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목 차

규 정	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3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비규정	7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원선출 규정	8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포상 규정	10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투고 규정	12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논문심사 규정	19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윤리규정	21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23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2016.12.20. 제정
2018.10.17. 개정
2018.11.20. 개정
2020.01.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물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환경조절, 생산시설,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보급과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간담회의 개최
3. 국내외 학술 교류
4. 학회상 시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경상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구독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
2. 학생회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 학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으로 이사회에 결의로 추대를 받은 자
4.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
5. 구독회원 : 본 학회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학술단체로서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단체
6. 종신회원 : 본회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회비) 각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명예회원, 종신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탈회) 탈회를 원하는 자는 탈퇴 시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그 취지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비의 반환) 탈회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운영이사 20인 이내, 이사 40인 이내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취임에 관하여 자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직을 정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본회는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사무총장)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이사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본회운영, 학술 활동 등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운영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학회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이 회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3.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4.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 ⑥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 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3. 운영이사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혹은 10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1. 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 가. 회의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 나. 표결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 의결사항

- 가. 정관의 변경
- 나. 감사의 선출
-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운영이사, 및 이사로 구성 된다.

1. 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가. 회장 및 이사회 재적인원의 1/5 이상이 소집되어야 한다.
- 나. 이사회는 재적인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 가. 회원자격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다.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과 위원소속에 관한 사항
- 라.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사항

제21조(운영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부의사항 및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위원회) 본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분과) 본회는 필요시 산하에 연구관련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4조(자산 및 경비) 본회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생물 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생산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지식보급을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본회의 자산 및 경비는 회원의 회비, 학술대회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보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 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때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익을 위한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비규정

1993.04.01. 제정
2005.05.13. 개정
2006.05.12. 개정
2006.10.20. 개정
2010.06.11. 개정
2016.09.01. 개정
2020.06.2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종류)

- ① 입회비 : 10,000원
- ② 정회원 : 50,000원
- ③ 학생회원 : 30,000원
- ④ 구독회원 : 15,000원
- ⑤ 종신회원 : 1,000,000원
- ⑥ 단체회원 : 1구좌 당 500,000원으로 하고 1구좌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및 단체회원 연회비)

본 회의 임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1,000,000원
- ② 부회장 : 300,000원
- ③ 감사, 운영이사 및 이사 : 100,000원(종신회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단체회원은 1구좌당 5명 이내의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 (회비미납)

본 회의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5조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초록 제출 시 회비납부 의무)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초록 제출 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회비의 징수 및 관리)

회비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업무는 회장이 관장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원선출 규정

2007.05.11. 제정

2016.09.01. 개정

2020.06.26.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11조를 근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운영이사 30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8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의 3명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3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선거공고일 기준 6년 이내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차기회장의 선출)

제1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본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선관위는 현 학회의 회장 임기 종료 6개월 이전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단,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선거일정 확정,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 투표지의 발송 및 취합,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선관위는 당해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

제2항(선출시기)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3항(피선거권자의 자격 및 후보자의 확정)

-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 전원에게 입후보 여부를 문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 ③ 차기회장 후보자자격을 가진 입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학회활동, 계획 등이 명시된 A4 1매 내외)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선거권자의 자격) 본 학회의 현 임원으로 한다.

제5항(선거방법)

- ① 투표는 선거권자의 1인 1기표의 직접투표로 한다. 단, 직접투표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선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회장단에 제출한다. 선거일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화 되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③ 투표기간은 투표 안내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6항(당선자의 확정)

- ①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③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④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추대된 자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제7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5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기타 임원의 선출)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포상 규정

2000.10.20. 제정
2003.04.21. 개정
2005.05.21. 개정
2006.10.20. 개정
2016.09.01. 개정
2018.10.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의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장 포상 구분 및 포상위원회의 구성

제2조 (구분) 포상은 ‘학술공적상’, ‘학회우수논문상’,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우수논문상 추천’, 기타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구성)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포상위원회를 둔다.

- ① 포상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 직전 편집위원장, 그리고 직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총 5인으로 구성하고,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장(이하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②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학회장이 지명한다.
- ③ 포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를 따른다.

제3장 포상대상자의 선정

제4조 (학술공적상) ‘학술공적상’은 본 학회와 유관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①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 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
- ②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공적상’으로 하며, 학회장이 시상한다. 만약 학회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패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

제5조 (학회 우수논문상) ‘학회 우수논문상’은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선정한다. 편집위원회가 2인을 선정하여 포상위원회에 추천하고, 포상위원회는 2인중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 ①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하며, 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
- ② 상장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으로 하며 학회장이 시상한다. 만약 학회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장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

제6조 (과총 우수논문상 추천) 과총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3인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포상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1인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수상자로 추천한다.

제7조 (공로패) 공로패는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전임 학회장, 사무총장과 편집위원장에게 학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 (감사패) 감사패는 본 학회 행사개최에 기여한 회원(학회 준비위원장)에게 학회장이 수여한다.

제9조 (기타 포상)

- ①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우수 구두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우수구두발표상’으로 한다. 이 때 포상위원장이 지명한 2인이 구두발표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 ②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우수포스터발표상’으로 한다. 이 때 포상위원장이 지명한 2인이 포스터발표자에 대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 ③ ‘우수구두발표상’ 및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의 규모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상기한 기타 포상 외에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수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회장이나 포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 때 포상위원회는 포상의 명칭, 상장 또는 상패의 내용 및 시상 시기를 결정한다.

제4장 시상

제10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시에 학회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시총회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도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자에게는 포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포상금의 규모를 정한다.

- ① ‘학술공적상’의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우수논문상’의 상금 규모 또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며, 만약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하는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
- ③ ‘우수구두발표상’, ‘우수포스터발표상’ 및 기타 포상에서 포상금을 수여하는 경우 이사회가 포상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투고 규정

1992.02.22. 제정
2000.01.21. 개정
2000.07.14. 개정
2006.05.12. 개정
2007.05.11. 개정
2007.10.27. 개정
2010.03.05. 개정
2012.12.10. 개정
2013.11.30. 개정
2020.06.26. 개정

1.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연4회 발행하는 공식적인 학술지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행한다.

2. 투고자격

- 2.1 투고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하나 공동집필인 경우 비회원도 포함될 수 있다.
2.2 논문의 주저자(공동 주저자 포함)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3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타 학회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4 투고 원고는 본 학회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발표 논문이라도 가치가 인정될 경우 게재될 수 있다.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2.5 투고 논문이 KCI 문헌유사도 검사 등의 검사 결과 표질률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거부 처리를 내릴 수 있다.

3. 원고 작성요령

원고는 논문으로 한다.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3.1 국문논문 :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고 최고 1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각 순서 사이는 1줄을 띠운다.

① 제목, 저자명, 소속명, 직위(국문), ② 제목, 저자명, 소속명, 직위(영문), ③ Abstract, ④ Additional key words, ⑤ Corresponding author(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⑥ 서론, ⑦ 재료 및 방법, ⑧ 결과 및 고찰(결과, 고찰로 나눌 수 있음), ⑨ 적요, ⑩ 추가 주제어, ⑪ 사사, ⑫ 인용문헌 ⑬ 표 및 그림

3.2 영문논문 : 논문매수는 국문논문에 준한다.

① 제목, 저자명, 소속명, 직위(영문), ② Abstract(국문과 동일한 내용), ③ Additional key words, ④ Corresponding author(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⑤ Introduction, ⑥ Materials and methods, ⑦ Results and Discussion(결과, 고찰로 나눌 수 있음), ⑧ Acknowledgement, ⑨ Literature cited, ⑩ 제목, 저자명, 소속명, 직위(국문), ⑪ 적요(Abstract의 국문요약), ⑫ 추가 주제어 ⑬ Tables and Figures

3.3 표지 작성 요령

3.3.1 제목: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논문 내용을 포함하는 간결한 설명이어야 한다. Series 논문은 가능한 피한다. 영문 제목은 각 단어의 첫자는 대문자로 하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한다. ‘…에 관한 연구’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영문제목에 ‘A study on…’이나 ‘Studies on…’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상품명이나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잘 알려진 종의 경우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품종명은 품종간 비교를 위해서 또는 재배 품종의 특성을 강조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용어를 제외하고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3.3.2 저자명: 저자가 2명 이상이면 가운데 점을 찍는다. (예, 김 ○○* · 박 ○○)

영문명은 이름 뒤에 성을 표기해야 하고, 이름 사이에 hyphen(–) 표시의 유무는 저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표기한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별표(*)를 하여 표시하고 각주에 이를 명기한다. 저자가 이후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경우, 새 기관은 각주로 표시할 수 있다.

3.3.3 소속: 구체적으로 명확히 쓰며 여러 소속일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의 윗첨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김 ○○1 · 박○○2) 1서울대 농공학과, 2전남대 원예학과

3.3.4 직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예,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 박사후 연구원,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만 기재)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3.3.5 각주: 표나 그림의 특정 부분의 설명을 표시할 때 각주를 사용한다.

3.3.6 Additional key words와 추가 주제어: 논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표시한다. 제목에 나오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량이나 생장 등 너무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인 것은 피한다. 학명의 경우에는 명명자는 제외한다. 국문은 가나다, 영문은 ABC 순으로 기재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 적요에 추가 주제어를 넣을 시, 초록의 추가 주제어 순서대로 넣는다.

3.3.7 Abstract: 초록은 연구의 목적, 사용된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300 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 문단으로 작성하며, 번호를 붙인 개조식은 사용할 수 없다. 정의되지 않은 약어 또는 지정되지 않은 참조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인 종의 이름, 화학적 이름,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인 용어를 사용 할 수 있다.

3.3.8 교신저자 이메일, 공동주저자 여부 등 해당사항을 Additional key words 다음에 표기할 수 있다.

3.4 본문 작성 요령

3.4.1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적요, 인용문헌에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에 위치시키고 위 문장과 1줄을 띠운다.

3.4.2 서론: 서론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사, 동향 등을 알기 쉽게 간단히 언급하며, 연구목적을 마지막으로 기술한다. 장황한 서술이나 ‘…는 …에 보고하였고’ 식의 단 순한 나열식 반복은 피하며, 제시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전 간행물들을 인용해야 한다.

3.4.3 재료 및 방법: 결과의 표나 그림에 관련된 모든 재료 및 실험방법, 실험설계 및 통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새로 창안하지 않고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의 사용 시는 가능한 문헌으로 대체한다. 사용된 식 물재료의 학명 및 필요시 품종명은 반드시 표기한다. 실험기자재 및 센서 등을 표기할 때, 모델명, 제조사, 국 가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3.4.4 결과 및 고찰: 결과는 그림과 표의 내용을 이용하여 설명을 간결하게 해야 한다. 양적인 변화는 가급적 그림으로 나타내고 표의 사용을 억제한다. 고찰은 결과의 반복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새로 얻어진 연구 결과 와 그 중요성을 이미 알려진 사실과 연관시켜 비교, 분석과 함께 결과의 의미와 저자의 결론을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과와 고찰로 각각 나누어 표기할 수 있다. 표와 그래프는 인용문헌 뒤에 각 페이지당 1개씩 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3.4.5 적요: 필요한 경우에는 복잡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결론짓기 위하여 별도로 쓸 수 있으나 보통은 영문 Abstract 내용에 준한다.

3.4.6 사사(Acknowledgement): 필요시 표기한다.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비 지원기관을 언급할 수 있다. 동료 및 전문직 종사자의 도움을 표기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지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승인은 피해야 한다.

3.4.7 Literature cited: 정기 간행되는 학술 잡지, 보고서, 단행본, 학위 논문 등을 수록한다. 국문논문이나 영문 논문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되, 영문논문이 아닌 경우 팔호 안에 해당언어(예, (in Korean))를 인용문헌의 끝 부분에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수록하며 인용문헌을 입수치 못해 재인용할 때는 원저자와 인용자를 둘 다 표시한다.

본문: 직접 인용 또는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저자의 성(性)과 하버드 시스템에 따른 출판 연도를 적는다. 인용문헌의 배열순서는 알파벳 순(한자권 문헌의 저자명은 그들의 발음에 따름)으로 나열해야 한다. (2.5.9 참조)

목록: 인용된 모든 논문은 저자 성별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열 되어야 한다. 나열 순서는 저자, 년도, 논문 제목, 발표지명, 권, 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논문의 호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인용문헌이 동일 저자의 여러 편의 논문일 경우 발표년도 순서에 의하여(발표년도가 빼를수록 앞에 표기), 동일년도에 2인 이상의 공동저일 경우 공동발표자 이름의 ABC순서에 의한다. 저자와 발표년도가 같을 경우에는 연도에 소문자의 알파벳을 병기 한다(1997a, 1997b). 저널의 이름은 논문제목 약어목록 (<http://www.issn.org/services/online-services/access-to-the-ltwa/>)에 따라서 마침표 없이 축약해야 한다. DOI 사용을 적극 해야 하고 논문이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경우 DOI를 제공해야 한다. 타인의 비공개 저작물(사적인 통신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과도한 자기인용은 피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긴 참조문헌은 피해야 한다.

다음 예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학술잡지

Garcia-Hernandez M, T.Z. Berardini, G. Chen, D. Crist, A. Doyle, E. Huala, E. Knee, M. Lambrecht, N. Miller, and L.A. Mueller 2002, TAIR: a resource for integrated *Arabidopsis* data. *Funct Integr Genomics* 2:239–253.

(2) 학술잡지 + DOI

German M.A., M. Kandel-Kfir, D. Swarzberg, T. Matsevitz, and D. Granot 2003, A rapid method for the analysis of zygosity in transgenic plants. *Plant Sci* 164:183 - 187. doi:10.1016/S0168-9452(02)00381-3

(3) 전자 저널

Chen W.H, X.M. Zhao, V. van Noort, and P. Bork 2013, Human monogenic disease genes have frequently functionally redundant paralogs. *PLOS Comput Biol* 9:e1003073

(4) 온라인 첫 기사

Weeks D.P., M.H. Spalding, and B. Yang 2015, Use of designer nucleases for targeted gene and genome editing in plants. *Plant Biotechnol J* (in press). doi:10.1111/pbi.12448

(5) 특허

Ubersax J.A., and D.M. Platt December 9, 2010. Genetically modified microbes producing isoprenoids. US Patent Application No. 20100311065 A1

(6) Book

Ribéreau-Gayon P., D. Dubourdieu, B. Donèche, and A. Lonvaud 2006, Botrytized sweet wines (Sauternes and Tokay). In RG Pascal, ed, *Handbook of Enology: The Microbiology of Wine and Vinifications*, Ed 2, Vol 1. John Wiley & Sons, West Sussex, UK, pp 449–458.

Vannini A., and G. Chilosi 2013, Botrytis infection: grey mould and noble rot. In F Mencarelli, P Tonutti, eds, *Sweet, Reinforced and Fortified Wines: Grape Biochemistry, Technology and Vinification*. Wiley-Blackwell, Chichester, UK, pp 159–169.

(7) Electronic Book

Jander G., and V. Joshi 2009, Aspartate-derived amino acid biosynthesis in *Arabidopsis thaliana*. The *Arabidopsis* Book 7:e0121. doi:10.1199/tab.0123

James C. 2009, Global status of commercial biotech/GM crops: 2009. ISAAA Brief 41. ISAAA, Ithaca, NY, USA

(8) 학위논문의 경우

Reeder J.D. 1981, Nitrogen transformation in revegetated coal soils. PhD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 Fort Collins. (Dissertation Abstract 81-26447) pp 23–40.

(9) Online Database

GM approval database 2014, ISAAA. <http://www.isaaa.org/gmapprovaldatabase/>. Accessed 27 June 2014

(10) Web Page

Borlaug, N. 2014, Global status of commercial biotech/GM crops: 2014, ISAAA Brief 49–2014: Executive summary. Available via <http://isaaa.org/resources/publications/briefs/49/executivesummary/default.asp> Accessed 27 June 2014

3.4.8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Table 1, Fig. 1 등으로 표시한다. 제목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동일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 작성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본문의 재료 및 방법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표에서 내용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 표 밑에 역순서(z, y, x 등)의 알파벳 위첨자로 된 각주를 사용한다. 그림은 사진, 그래프, 차트 등을 모두 포함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그림은 명암이 뚜렷한 흑백으로 출판물에 적합한 품질의 그림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Color 인쇄시는 Color Slide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개의 그림에 여러 그래프가 인용될 때, 각 그래프를 대문자(A, B, C 등)로 표시한다. 그림의 범례는 텍스트를 참조하지 않고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재료 및 방법 또는 다른 표 또는 그림에 제시된 세부사항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참조만 해야 한다. 그림에 사용된 기호 및 약어는 본문에서 정의하였어도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정의해 주어야 한다.

3.5 사례별 작성 요령

3.5.1 사용언어 및 용어: 국문 논문의 경우 내용전달에 필요하면 영문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 논문이나 국문 논문 중 영문으로 작성된 부분(제목, abstract, table, figure 등)은 특히 어법에 맞게 작성한다. 전문용어는 본 학회용례 혹은 각 해당 전문용어사전에 준 한다.

3.5.2 이탤릭체: 인쇄시에 이탤릭체로 표시할 것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5.3 단위: 단위를 표시할 때 %, °C, ±를 제외한 단위는 영어철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문자표에서 제공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음). SI 단위는 가운데 점과 윗첨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SI단위의 경우 사선(/) 사용이 가능하다.

3.5.4 명칭: 식물명 또는 동물명 등은 반드시 첫 번째 나올 때 학명을 언급하여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일반명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학명은 이탤릭체로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약자를 사용하며 품종명은 cv 다음에 쓰는데, 영문논문에서 cv를 생략할 때는 Single quotation mark를 쓴다. 품종명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예) *Lactuca sativa L.*

L. *sativa L.*

L. *sativa L. var. capitata L.*

L. *sativa L. cv. Great Lakes*

L. *sativa L. 'Great Lakes'*

상품명의 사용을 피하고 일반 명칭 뒤에 ()를 사용해 표기한다.

3.5.5 약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자(<http://www.issn.org/services/online-services/access-to-the-ltwa>)이외에는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완전한 명칭을 쓰고 () 내에 약자를 쓴 후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3.5.6 띠어쓰기: 숫자와 단어 사이를 영문에서는 띠어쓰며(단, %와 ℃는 예외), 국문에서는 붙여 쓴다. 괄호의 앞과 뒤를 영문에서는 띠어 쓰며, 국문에서는 붙여 쓴다. 국문 논문은 띠어쓰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용례 참조).

3.5.7 표: 정량적인 단위들은 각 열의 상단에 표시하고 매 줄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계결과를 병기한다. 표 내에서 별표(*, ***)는 반드시 통계처리에 의한 유의성 검정에만 사용한다. 정순서의 알파벳(a, b, c 등)도 수치간의 유의성 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3.5.8 그림: 문자를 붙이거나 손으로 쓰면 안 된다. 그림의 문자 크기는 해당 그림을 가로 5 cm 되게 축소했을 때 그 문자의 높이가 최소 1 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20 cm, 세로 30 cm 이내로 한다. 부호는 ●, ○, ■, □, ▲, △, ▽의 순서로 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호의 정의는 그래프 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9 문헌의 인용

(1) 국문 논문

①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Lee(1998), Robert와 Smith(1995), (Lee, 1998), (Robert와 Smith, 1995)

② 세사람 이상인 경우

Robert 등(1995), (Robert 등, 1995)

③ 두편 이상인 경우

Lee(1997, 1998a, 1998b), (Lee, 1997, 1998a, 1998b; Robert와 Smith, 1999)

(2) 영문 논문

①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Kim(1998), Robert and Smith(1995), (Lee, 1998), (Robert and Smith, 1995)

② 세사람 이상인 경우

Kim et al. (1998), (Robert et al., 1995)

③ 두편 이상인 경우

Lee (1997, 1998a, 1998b), (Kim, 1995a, 1995b; Robert and Ho, 1995, 1997)

3.5.10 기타: 기타 사항은 기존 학회의 표기 요령에 준하고 특별한 사항은 논문 심사시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3.6 논설: 논문에 준하고 본문내의 순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3.7 초록: 최신 주요논문의 저자, 제목, 년도, 발표지명 및 권수, 쪽, 논문의 적요를 기재하고, 끝에는 초록작성자의 성명, 소속을 기재한다. 1쪽을 초과할 수 없다.
- 3.8 국제회의 보고: 국내외에서 개최된 생물환경조절에 관련된 회의 보고로서, 국제회의에 참가한 회원의 보고로 하며, 원칙적으로 투고에 의하나 본회에서 의뢰할 수도 있다.
- 3.9 새로운 기자재 및 신간소개: 새로운 기자재나 신간서적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새로운 기자재는 제목, 소개자, 주소, 내용 및 참고문헌의 순서로 소개한다. 신간서적은 저자명, 도서명, 출판년도, 가격 및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끝에 소개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다.

4. 투고방법

- 4.1 논문은 아래 흔글(HWP) 또는 MS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논문 투고는 논문투고 시스템 (<http://submission.ph-pf.org/>)에 접속하여 투고한다.
- 논문형식: 용지 A4, 여백: 기본(윗쪽, 3cm; 아랫쪽, 2.5cm; 왼쪽, 2.0cm; 오른쪽, 2.0cm) 줄번호: 페이지 연속, 줄간 1.5 (영문 논문은 Double Space), 한글입력체계: 자동간격조절 (해제), 글자체: 한글(바탕), 영문(Times New Roman), 글자크기 11, 쪽번호: 아래쪽 가운데 위치, 단수: 1단 편집
- 4.2 저자는 긴급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심사 요청시 심사 의뢰 후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긴급심사료는 편당 200,000원이며, 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무통장 입금시 계좌정보 : 우체국: 610246-01-001759(예금주: 사단법인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 4.3 완본 제출 : 최종 심사 후에는 '게재 가'를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시스템에 별첨 그림을 포함한 원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 4.4 인쇄된 교정본의 교정은 교신저자가 최종 확인한다. 단, 교정 시에 간단한 오타 및 실수에 의한 표기 이외에 원고의 변경, 추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5 게재가 확정된 논문, 논설의 일반 심사료는 없으며, 게재료는 기본 6면까지는 300,000원이며, 면 초과시 면당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4.6 국제회의보고 및 강좌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 4.7 새로운 기자재 및 신간서적 등의 게재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 4.8 학술지 인쇄본 및 별쇄본은 배부하지 않으며, 인쇄본은 요청한 경우에만 저자에게 제공하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 연구출판윤리(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연구윤리규정(2007.10.26. 제정) 및 국제규범에 따른다.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6. 기타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내부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논문심사 규정

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07.05.11. 개정
2007.10.27. 개정
2012.12.10. 개정
2020.06.26. 개정

제1조(심사 절차 및 위원 선정)

- (1) 투고된 논문은 먼저 편집위원장의 심사(1차 심사)를 거친다.
- (2) 제출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논문제출문에 추천된 5인의 심사위원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3) 심사를 의뢰할 때는 심사내용을 기재할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함께 송부한다.

제2조(구성)

- (1) 심사기준: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학회의 목적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 (2) 심사결과의 구분: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수정후게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수정후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게재불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

- (3)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 결과로서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심사 합격)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로 추천된 논문으로 한다.

제4조(재심)

- (1) 논문이 최초의 심사위원 2인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제3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수정후재심사’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제5조(심사 불합격)

- (1) 제4조의 재심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제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2)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고 반송된 원고가 3개월 이내에 재제출 되지 않으면 제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후 재제출을 원하면 저자는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수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에 합격한 논문과 해당 논문의 심사판정서와 심사평을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심사판정서와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논문을 제출토록 한다.

제7조(수정 확인)

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8조(논문 제재)

심사에 합격한 논문으로서 수정 확인이 완료된 논문은 제7조의 수정확인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9조(논문 제재 예정 증명서)

학회는 제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 전에 제재예정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심사)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심사수당 지급)

심사가 완료 후에 심사위원에게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5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단,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윤리규정

2007.10.26. 제정
2016.09.01. 개정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 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 이내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국내 전문가로 위원장이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 조(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조사)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4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 이내에 서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5.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6.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후속조치)

1. 위원장은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경고, 자격정지, 제명,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12.12.10. 개정
2016.10.12. 개정

제1조(사업)

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에서 발행하는 “시설원예·식물공장”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1)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 (2) 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 (3) 학회지 게재 논문의 선정
- (4)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구성)

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10인 내외를 둔다. 본 학회 전임이사는 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3조(자격)

소속위원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4조(선출)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소집)

학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비)

위원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학회지 출판)

- (1)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는 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 (2)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하며,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출판한다.